

2016년도 3차 국민체육진흥기금

스포츠산업 용자 신청공고 ①

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6년도 스포츠산업 용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☞ **용자규모** 40,159백만원(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용자예산 29,000백만원 포함)

☞ **용자대상업체**

- ① **민간체육시설업체** : 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·보수하려는 자 (단, 회원제 체육시설,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)
- ② **체육용구생산업체** 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
- ③ **스포츠서비스업체** :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(외국계 업체 제외) 스포츠경영업체, 스포츠마케팅업체, 스포츠정보업체

☞ **용자이용**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변동금리('16년 2/4분기 1.69%, 분기별 변동금리)

☞ **세부내용**

대 상	분 야	한도액	상환조건	자격요건 등
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등록체육 시설(골프장, 스키장업, 자동차경주장업) 및 요트장, 조정장, 카누장, 빙상장, 승마장, 종합체육시설, 벨로드롬,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(단,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)	시설설치자금	30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지매입비 제외, 설비교체 포함 ■ 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 ■ (개보수자금)의 경우 시설 운영기간,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■ 사업자가 시공업체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■ 풋살장, 어린이수영장, 유소년농구장, 리틀야구장, 스크린야구장 사업등록종목 등록업체 용자대상 가능 (단,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) ■ 도로교통법 제52조의 어린이통학버스는 체육시설 안전시설로서 체육시설업체 시설설치 및 개·보수자금으로 신청 가능 ■ 동일사업자의 용자한도액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용자금 잔액을 기준으로 85억원 이내에서 가능
	개·보수자금	10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	운전자금	2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『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, 볼링장, 수영장,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궁도장, 게이트볼장, 농구장, 당구장, 라켓볼장, 럭비풋볼장, 롤러스케이팅장, 배구장, 배드민턴장, 볼스레이장, 사격장, 세팍타크로장, 수상스키장, 스쿼시장, 썰매장, 씨름장, 야구장, 양궁장, 역도장, 에어로빅장, 육상장, 체육도장, 체조장, 축구장(풋살장), 탁구장, 펜싱장, 하키장,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(단,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)	시설설치자금	20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회원제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설중인 골프장 중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골프장 (대중제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) ■ 기업회생절차 진행인 골프장 중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(대중제 골프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계획안 인가 조건) ■ 회원제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한 골프장(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) -단, 전환추진한 골프장 대상 기준 :공고일 기준 3년이내 전환추진 골프장
	개·보수자금	10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	운전자금	1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회원제에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	시설설치자금 및 개·보수자금	85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(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) 관련 사항임 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공포(16.2.3)후 6개월 후 시행(16.8.4)
	운전자금	10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자	개·보수자금	50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1조 (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) 관련 사항임 ■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공포(16.2.3)후 6개월 후 시행(16.8.4)
	운전자금	10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


문화체육관광부



국민체육진흥공단

2016년도 3차 국민체육진흥기금

스포츠산업 용자 신청공고 ②

세부내용

대상	분야	한도액	상환조건	자격요건 등
체육용구 생산업체	설비자금	10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
	연구개발자금	3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	운전자금	2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스포츠서비스업체	설비자금	10억원	10년(거치기간4년)	■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, 스포츠마케팅업,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(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,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 권리를 획득한 자)
	연구개발자금	3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	운전자금	2억원	5년(거치기간2년)	

용자액 배분

- 심사기준에 따라 기금용자심의회 개최 후 배분
- ※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, 사업진행정도, 자기자본력, 담보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, 업체선정 예정

용자신청서 교부

-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
 - 홈페이지 주소 : www.kspo.or.kr (해당메뉴 : 사업안내)스포츠산업육성)스포츠산업용자 페이지)
 - 상기 페이지의 "사업개요 및 신청서다운로드" 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.
- ※ 구비서류 확인,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용자신청서 접수

- 3차 용자 접수기간 : 2016. 6. 16 ~ 2016. 7. 14(토, 일요일 제외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(※ 우편 접수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)
- 제출서류 : 용자신청서(홈페이지 다운로드), 사업계획서, 용자추천서 및 용자분야별 해당 서류
- 용자취급 금융기관 : 국민은행 등 14개 시중은행(용자추천서 발급기관, 용자업체 선정 후 담보평가 실시)

유의사항(필독)

- 접수마감일 기준 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.
-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용자사업자를 선정하고, 용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, 용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예산 소진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용자사업자 선정 후 용자금 지급기준 :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(우편, 팩스 등)
- ※ 용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용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상

상담 및 접수처

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산업실 산업지원팀
 - 주 소 : 0179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(공릉동) 별관 2층
 - 담당자 및 전화번호

성명	전화번호	팩스	이메일
한은경	02-970-9685	02-970-9678	sophia@kspo.or.kr
신아영	02-970-9674	02-970-9678	ayshin@kspo.or.kr



문화체육관광부



국민체육진흥공단